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 마련 등 >

■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05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 마련	3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손해배상 근거 마련	17
3. 개정안 부칙	20
[참고자료]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7. 10.
3. 회 부 일 : 2025.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법률상담 제공, 교원공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이 무고성 신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교원은 무고성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교권이 위축되고 교육활동이 소극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소송 발생 시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가. 소송 지원 시 교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
되,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1조).

다.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소송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 안 제2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 성 판단
2. 3. (생략)	3. 4.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②·③ (생 략)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학
생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
정당한 교육활동과 -----
-----법률 상담 또는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을 하려면 미리 시·도교권 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소송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소송 지원을 한 후 지체 없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
성·운영 및 소송 지원에-----

-----.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¹⁾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한 범죄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2020년 1,197건, 2023년 5,050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4년에는 816건 감소하였으나 4,234건 수준으로 나타남.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활동 침해 건수	1,197	2,269	3,035	5,050	4,234

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자료: 교육부

한편,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함(「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관련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제1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한 다음의 행위 - 범죄 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학생(「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	보호자 등(「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기타(「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진학 - 퇴학처분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교원이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거나 피해교원이 침해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 제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원에 대한 소송 지원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제21조의 제목을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변경하여 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지원단의 지원가능사안을 구체화하며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개정안 제21조제1항은 법률지원단의 지원가능사안을 ‘교육활동’에서 ‘학생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서의 ‘교육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이에 대한 조치,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에서는 ‘교육활동’을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 등,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지위법」에서도 이에 준하는 내용이 교육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로 교육부의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서는 교육활동의 정의로 「학교안전법」 제2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또한 해당 매뉴얼은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행한 범죄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³⁾ ‘교육활동 중’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시로 개정안에 제시된 생활지도를 포함하고 있는데,⁴⁾ 생활지도는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교원이 유아 또는 학생을 지도하는 것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각각 유아생활지도와 학생생활지도로 규정되어 있음.⁵⁾

개정안은 교육활동의 내용으로 ‘학생지도, 생활지도’를 열거하고 있으나, 학생지도는 학생생활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생활지도에 유아생활지도와 학생생활지도가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지도’만 규정하거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25.2., p.8

3)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25.2., p.9

5)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과 달리 ‘정당한’ 교육활동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⁶⁾ 법령에 근거한 교육활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특정 교육활동이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교원이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교육활동 관련 조항 등]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u>교육활동</u>”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6)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참고: ‘교육활동 중’의 예시

-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②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및 일과 시간 이외의 교외생활지도
-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 입장 시 행하는 활동
- ⑧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징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안 조사 및 상담 등
- ⑨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에 관한 상담
- ⑩ 그 밖에 법령에 의해 교원이 직무상 행하는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 다음으로 개정안 제21조제1항은 법률지원단의 지원내용을 ‘법률 상담’에서 ‘법률 상담 또는 소송대리 등의 지원’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 따른 법률 지원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현행법은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교육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시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한 소송대리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⁷⁾

7) 「교원지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21조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제22조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법률적 분쟁에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법률 자문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대리 등의 지원은 규정하지 않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해당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교원지위법」 상 법률 지원]

구분	법률지원단(제21조)	교원보호공제사업(제22조)	교육활동보호센터(제29조)
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시 교원 지원	•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 지원
지원내용	• 법률 상담	•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 법률 자문(상담)
지원실적 (2024 기준)	* 시·도교육청별 운영방식 상이 *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 운영	• 258건(8억 8,238만원)	• 7,143건(6,187명)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시 법률지원단을 통해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될 경우, 명확한 근거에 따른 소송대리 등의 지원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수행이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능해지고 소송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시간적·비용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함께 소송대리도 가능한 법률지원단 운영 방안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 제21조제2항은 소송 지원을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원칙: 사전심의, 예외: 사후심의), 개정안 제18조제1항제2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직무관련성 판단’을 추가하고 있음.

이는 교원의 직무 관련 사안에 한정하여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 등은 주로 지원을 희망하는 교원이 신청한 후, 지원기관이 자체검토(직무관련성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개정안과 같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경우 회의 소집, 심의·의결, 결과 통지 등의 기간 소요로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513호)에서도 교원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두 개정안을 비교해보면, 제21조와 관련하여 ① 조제목은 두 개정안 모두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변경하여, 현행법보다 확대된 범위로 규정함.

② 지원가능사안으로 이준석의원안은 ‘교육활동’을 ‘학생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김정재의원안은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③ 지원내용으로 이준석의원안은 ‘법률 상담’을 ‘법률 상담 또는 소송대리 등’으로 확대하면서 소송 지원 전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김정재의원안은 ‘법률 상담’을 ‘법률 상담 등’으로 확대하면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음.

④ 그 외에 이준석의원안은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외에 소송 지원에 대한 사항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제21조 개정과 관련하여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제1항제2호에 ‘직무관련성 판단’을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두 개정안은 법률 상담 지원만 규정한 현행법에 비하여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명시하여 해당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지원가능사안으로 규정한 내용과 지원절차 등이 상이하므

로, 교원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지원 관련 사항을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교원에 대한 소송대리 등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구분	현행	이준석의원안(제11405호)	김정재의원안(제10513호)
① 조제목	•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지원 가능 사안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 <u>교육활동</u>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 학생지도, 생활지도, 학급 운영 등 <u>정당한 교육활동</u>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 제19조에 따른 <u>교육활동 침해행위</u> 가 발생한 경우 • <u>그 밖에 교육활동</u>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③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 법률 상담 또는 <u>소송대리</u> 등의 지원 * <u>소송 지원 전 시·도교권 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 필요(긴급한 경우 사후 심의 가능)</u>	• 법률 상담 등 -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소송 수행시 변호인 선임 또는 <u>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u>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
④ 기타	•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필요 사항 위임	•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및 <u>소송 지원</u> 필요 사항 위임 •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제1항제2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직무관련성 판단’ 추가	-

주: 개정안 원문은 【참고 1】 교원에 대한 소송대리 등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원문 참조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안 제21조제1항) 법률지원단의 지원가능사안 구체화: 신중검토 •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을 통해 교육활동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생활지도, 학급 운영 등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교육활동’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변경할 경우, 교원의 과실 여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반영되어 법률지원 등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개정의 실익이 없음. - (안 제21조제1항) 법률지원단의 지원내용 확대: 일부수정 •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선임 등 인력 구성은 교육청 별로 상이*하며, 변호사 신분이 임기제공무원인 교육청은 소송대리 지원에 한계**가 있음
--

* 현재 교원의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법률지원단을 위촉직으로 구성(대구, 부산, 충북 등)하거나 별도 인력풀을 마련하여 제공·연계(대전, 충남)하고 있으며, 지역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직접 변호사 선임을 지원(강원)하는 경우도 있음

** 공무원 신분의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직무상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소송 수임 불가
※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 이에, 법률지원단의 지원 내용을 ‘법률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지원단에서 소송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원활한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개정안	수정안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u>학생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u>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 또는 <u>소송대리 등의 지원</u> 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을 하려면 미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소송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소송 지원을 한 후 지체 없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u>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u>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 또는 <u>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u> 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때 「변호사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안 제2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호) 소송 지원을 위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 명시: 신중검토

-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 시 소송,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을 추가로 심의할 경우, 위원회 참석 등으로 인한 피해교원의 심적부담, 행정절차 증가에 따른 처리 지연 등으로 법률적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심의절차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先 지급 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인받도록 하는 경우, 환급 등에 대한 절차로 인해 교육청-교원 간 법적 분쟁 및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있음.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중검토

-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추가로 심의할 경우, 피해교원의 추가

절차에 대한 심적부담,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수행으로 업무 및 교육활동 지장,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 및 업무범위 충돌 등이 우려됨. • 긴급하게 소송 지원을 위해 ‘先지원-後위원회 심의’를 할 경우, 先지원을 결정한 사실이 위원회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객관적 판단이 어려움.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직무 관련 소송이 발생한 경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자체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 심의를 추가하는 경우 소송 지원 절차 증가 등으로 업무 지연이 예상됨. • 현행 공제사업 소송지원은 先지원하고, 해당 교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소송비를 회수하고 있어, 先지원-後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교육청: 이견없음 -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적 보호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손해배상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생의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손해배상 책임)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학생의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함.⁸⁾

8)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학생의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함께 교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근거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민법」 제750조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원지위법」에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현행 「민법」에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⁹⁾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현재 피해교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배상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학생 보호자 등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배상책임이 있는 행위 주체를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등’으로 확대하되 실질적 배상책임은 보호자에 부과하여 보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관할청이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배상금 수령에 따른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원지위법」*에 따라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심리적·신체적 치료비 등)은 보호자 등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표준약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 소유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이 훼손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하고 있지 않음. 단,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존재

개정안	수정안
제30조의2(손해배상 책임) <u>학생의 보호자가</u>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u>배상책임</u> 을 진다. 다만, <u>학생의 보호자가</u>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손해배상 책임) <u>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등이</u>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에게 <u>재산상의</u>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u>학생의 보호자 등이</u>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u>학생의 보호자 등이</u>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u>객관적으로</u>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기도교육청: 일부수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 손해배상 책임자를 ‘학생의 보호자’에서 ‘학생 및 보호자 등’까지 확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교육청: 이견없음

-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적 보호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법제처: 신중검토

- 「민법」 제750조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인 간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법에서 별도로 안 제30조의2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둘 실익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지원 등을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만 규정함.
- ☐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또는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안 부칙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법제처도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한 소송대리 지원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 1

교원에 대한 소송대리 등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원문

현행	이준석의원안(제11405호)	김정재의원안(제10513호)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신설>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u>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u>에 해당 교원에게 <u>법률 상담을</u>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직무 관련성 판단 3. 4.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u>학</u>생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 <u>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u>에 해당 교원에게 <u>법률 상담 또는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u>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소송 지원을 하려면 미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소송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소송 지원을 한 후 지체 없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소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현행과 같음)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의 선임 또는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